

변호사 등록 법무부 이관 및 변호사 복수화에 대한 의견

1. 개정법안 중 관련 조항

<등록관련>

개업 시 변호사단체(지방회)에 가입하고 법무장관에 등록(7조 1항, 2년후 효력 상실)
단, 지방자치단체나 소속기관 또는 회원소속 변호사회에 위 업무를 위탁하는 것 가능

<강제가입 규정 폐지 -소위 임의단체화 관련>

지방법원 관할구역마다 변호사 단체를 둘 수 있다. (60조 1항) - 강제가입 폐지

지방 변호사 단체는 변호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60조 2항)

변호사는 1개의 단체에만 가입(61조 1항)

법무부 장관의 설립인가(62조 1항)

변호사단체 연합회는 변호사단체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변호사 단체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쟁점에 대한 견해

- 문제제기의 배경은 변호사 직역 내에 일종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수임료 과다, 불성실 변론 등 특권적 지위의 남용이 계속되고 있고, 변호사들이 강제가입토록 되어 있는 유일의 변호사단체가 이에 대한 자정노력을 제대로 보이지 못해온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이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변호사 직역과 그 단체가 옳던 그르던 이런 외부적 개혁대상으로 지목된 것은 자업자득이다.

- 개혁의 목적은 사실상의 카르텔을 깨고 변호사들로 하여금 국민에게 질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적 기능을 회복하게 하고 이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역할을 적절하게 규정하는 것이다.

- 방안으로 제시된 '임의단체화(복수화)'의 기본 취지는 카르텔의 사실상의 원인제공자로서 강제가입단체인 '변호사 단체'를 지목, 이를 복수화-임의단체화시켜 시장경제의 경쟁원리를 도입하자는 것. 시장경제 시스템 하에서는 카르텔이 쉽게 형성될 수 없어 독점적 이윤추구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

- 개인 사무실을 가지고 운영하는 변호사 직역의 특징 상, '변호사'간의 경쟁구조가 확보되어 사법 서비스의 질을 강제할 객관적 여건이 확보되지 않는 한 '변호사 단체'간에는 사법서비스 경쟁보다 회원이윤 보장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변호사 단체의 '임의단체화'가 중국에는 이익단체적 성격이 강화된 변호사단체들의 난립으로 귀착되리라는 우려는 충분히 근거가 있어 보인다. 변호사 직역의 문제를 무리하게 변호사 단체의 문제로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 카르텔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나, 시장경제 그 자체가 긍정적 해결을 보장하는 보증수표는 아니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공공기능이 뚜렷한 경우 이를 규제할 강력한 통제장치를 만드는 방법이 오히려 현명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예로는 미국의 ABA가 변호사 직역의 무원칙한 사익추구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경우다. 강력한 변호사단체의 존재가 공익성을 보장하는 예는 일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카르텔은 그 원인이자 결과로서 진입장벽을 형성하게 되는데 변호사 직역의 경우 가장 근본적인 진입장벽은 변호사의 수와 관련된다. 경쟁원리는 변호사의 수의 확대를 통해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변호사 단체의 복수화는 '논리적'인 해결책이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다. 물론 그 동안 변호사단체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던 점은 인정하나 이는 복수화나 임의단체화에 대한 문제라기 보다는 주로 '징계권의 오남용'과 관련된 것으로 이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 이 점에서 변호사 단체의 자체징계권에 대해서는 분명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3륜 등 변호사 직역의 공익성, 공공성을 들어 일반 사업자단체와 구분하는 것이 가능한가? : 변호사 직역이 법원과 검찰 등 국가기관에 대한 공적인 견제역할을 수행하는 헌법에 명시된 공공서비스의 제공자인 반면, 수입료 등 사적 이윤추구의 방법으로 자유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라는 점 또한 분명하다. 변협은 이제까지 사업자단체가 아니라는 점을 지나치게 강변하는 과정-사실상 직역이기주의에 매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에서 도리어 '변호사 직역이기주의나 직역권위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기득권자의 한계를 노정해왔다. 이 점에서 변협은 오히려 변호사 직역의 사업자적 요소를 인정함으로써 변협이 어떻게 이를 통제하고 헌법상에 부여된 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가를 국민 앞에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제가 근간으로 삼는 대륙법계가 대체로 변호사를 다른 사업자 단체와 구분되는 직역으로 인정하여 변호사단체에 대한 강제가입을 통한 규율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협의 임의단체화가 과연 공공성의 제고로 귀결될 지는 보다 신중한 검토와 보다 체계적인 사례의 수집을 요하는 일이라 하겠다.

- 한편, 변호사 단체가 이러저러한 공적 기능을 요청받아 왔는가를 강조하는 것만으로 변호사 단체가 가진 '본원적 위상'을 증명하려는 변협측의 논리는 일종의 순환논법이다. 예컨대 법조 3륜등의 논리는 '법조일원화'라는 개혁의 관점에서 보면 언제든지 그 구조자체가 개혁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 점에서 현 변협의 위상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법구조개혁과정에서 그 지위와 역할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영역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 <변호사법 개정법률안> 중 제9장 징계 및 업무정지

1. 징계위원회의 구성에서 비법조인이 다수를 차지하도록 해야 한다.

제80조(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 개정안에는 징계위원장으로 법무부차관, 위원 및 예비위원은 판사 2인, 검사 2인, 변호사 2인, 법과대학교수 1인, 기타 1인을 법무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이같은 인적 구성으로는 법조인 6인, 비법조인 2인으로 되어 있어, 징계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징계의 미온성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징계는 공정하고 정당한 실체와 외관(appearance)을 갖춘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함.
- 미국의 각주의 법조징계위원회를 살펴보다도, 비법조인의 숫자를 법조인보다 더 많이 구성하는 것이 최선의 경향임.
- 따라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서 비법조인의 수를 법조인의 수보다 더 많게 해야 함.

2. 징계위원회 위원의 임명방법 및 임기

- 개정안에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이 주로 위원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방식보다 폭넓은 위원선정방법이 도입되어야 할 것임.
- 징계위원회의 임기는 2년보다 3년이 바람직함. 그것은 윤번제의 가능성을 도입하기 위함.
- 국회에서 3인, 법무부에서 3인, 대법원에서 3인을 선발하되, 그 인원은 시차간격을 두고 선출되도록 해야 할 것임(따라서 처음 임명시에는 1년 임기, 2년임기, 3년임기의 위원을 선임하고, 매년 1/3씩 교체하도록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봄).
- 물론 국회, 법무부, 대법원에서 선정하는 위원들의 절반 이상은 비법조인이어야 함. 전체적으로 법조인 대 비법조인의 균형이 맞도록 위원장은 유의해야 할 것임.

3. 징계사유를 조사할 주체와 조사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 제81조(징계절차의 개시)를 보면, 법무부장관이 징계사유가 있다고 '判斷'한 때에는 징계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검사장은 '검찰업무 수행중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發見한 때'에는 징계개시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변호사단체가 징계사유 있음을 '發見'한 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징계위원회는 스스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변호사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규정은 매우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
- 법조비리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기관이 없음. 법조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법조비리에 대한 정보수집, 비리제보 접수, 비리혐의 조사를 위한 기관이 필요함.
- 이제껏 변호사윤리위, 징계위에서 그러한 적극적 정보수집, 비리제보접수, 혐의조사를 위한 권한을 얻지 못해 징계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였음.
- 개정안도 發見, 判斷한 경우에 징계신청을 한다고 되어 있지, 비리의 調査, 情報蒐集 등의 기능이 빠져있어, 이대로라면 징계위원회도 거의 의미가 없음.

-따라서 징계위원회 산하에 <조사위원>을 선정해야 할 것임. 조사위원은 법조비리에 대한 제보를 받고, 혐의가 있다고 할 때 소환조사, 사무실 자료제출 요구, 압수수색을 할 권한을 가질 것임.

-이 <조사위원>에는 검사 2인, 변호사 2인 정도를 선임하여야 할 것임. 필요한 경우 보조인력을 일부 둘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할 것임.

변호사법 개정안에서 다음 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함.

◆ 변호사등록, 징계권을 변협, 법무부, 법원 중 누가 가져야 할 것인가.

◆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전관변호사에 대해 형사사건 수임을 2년간 제한하는 방안.

◆ 법학교수(4년제 법과대학 교수자격 10년 이상)에게 법률적 변론을 가능케 하기 위해 변호사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 대한변협의 임의단체화의 장점 및 부작용 문제.